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797 호 2013. 1. 28(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8호[도로명주소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9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80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83호[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6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8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42-16(진장동)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1.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부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동 284-16	2013-01-28	진정유통단지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체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	2009-01-23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동 42-16(진정동)	2013-01-28	진정유통단지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체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	2009-01-23	
3	울산광역시 북구 안암동 714-9와 14필지	2013-01-28	우문초등학교의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일대를 말하는 흔적을 조성된 지역으로 협정으로 협정으로 협정을 부여	2004-01-05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0B 5-3L	2013-01-28	는데 효문공단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협정을 부여 송도선생과 관련되어 도로명을 부여	2004-01-05	
5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265-2	2013-01-28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을 사용하였으며 천곡동 전체지역의 남쪽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	2008-03-11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7B 5L	2013-01-28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 먼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4-12-27	
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95B 7-2L	2013-01-28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2004-12-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9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총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연암동 425	상방1길 19-4	상방1길 23	2013.1.28.	착오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www.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1.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3. 1. 2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선발인원 : 4명
2. 접수기간 : 2013년 2월 8일(금) 18:00까지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임 기 : 2년(위촉일로부터)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서식), 자격증명서류 1부
6. 접 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자 김현주
☏ 052-241-8022/E-메일 : hjkim03@korea.kr
7. 선정결과 : 2013년 2월 20일(수) 18:00까지 개별통지
8. 자격요건
 - 토목·건축(구조)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축주택과(김현주 241-80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83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간이급수시설 관리 업무가 울산광역시 소관으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운영 목적 상실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전화(052-241-7764), FAX(052-241-776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